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등기번호     | 387009                   |  |                                |
|----------|--------------------------|--|--------------------------------|
| 등록번호     | 110111-3870098           |  |                                |
| 상 호 -    | 주 <del>식회사 이니셜커뮤</del>   | 나케이션즈  |                                |
| Ť        | 리디 주식회사 (Ridi            | Corporation)   | 2013.04.26 변경<br>2013.05.03 등기 |
| 본 점 🕹    |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9</del>   | <del>부삼동 824-25 대우디오빌플러스 1317호</del>   |                                |
|          | · 울특별시 강남구 r             | 치동 895 6 101호  | 2008.04.23 변경<br>2008.04.30 등기 |
| د        |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del>   | <del>- 서동 724 로즈데일빌딩 1216호</del>   | 2008.09.18 변경2008.09.30 등기     |
| بر       | <del>기울특별시 강남구 수</del>   | <del>}성동 162-2 엘슨</del> 빌딩 7층  | 2010.03.29 변경<br>2010.03.30 등기 |
| <u>ب</u> | 다음특별시 강남구 r              | <del>  치동 942-5 삼성빌딩 12층</del>   | 2011.03.18 변경<br>2011.03.23 등기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              | <del>}성로85길 26, 14층(대치동)</del>   | 2012.01.10 변경<br>2012.01.11 등기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              | <del>}성로85길 26, 14층,9층(대치동, 브이앤에스빌딩)</del>   | 2014.11.10 변경<br>2014.12.22 등기 |
| ر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티              | ll해란로 325, 10층,11층(역삼동, 어반벤치빌딩)  | 2016.03.28 변경<br>2016.04.06 등기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E<br>당)        | ll 헤란로 325, 4층, 10층, 11층(역삼동, 어반벤치빌  | 2019.01.14 변경<br>2019.01.28 등기 |
| 공고방법     | 서울 시내에서 발하               | <del>생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개재한다.</del>  |                                |
|          | 만 전산장애 또는                | 에이지 (http://www.ridicorp.com)에 게재한다. 다<br>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br>있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 | 2020.03.26 변경<br>2020.04.06 등기 |
| 1주의 금액   | 금 500 원                  |  |                                |
| 발행할 주4   | 식의 총수 <sub>640,000</sub> | 주  |                                |
|          | 10,000,0                 | <del>00 주</del>  | <u>2010.11.30</u> 변경           |

등기번호 387009 2010.11.30 등기 100,000,000 주 2020.03.26 변경 2020.04.06 등기

| 발행주식의 총수와<br>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 자본금의 액                                | 변경연월일<br>등기연월일              |
|---------------------------|----------------------------|---------------------------------------|-----------------------------|
| 발행주식의 총수                  | 160,000 주                  |                                       |                             |
| 보통주식                      | 160,000 주                  | <del>금 80,000,0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240,000 주</del>       | · · · · · · · · · · · · · · · · · · · | 2009.10.31 변경               |
| 보통주식                      | <del>240,000 주</del>       | <del>금 120,000,000</del> 원            | 2009.11.06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258,000 주</del>       |                                       | 2009.12.18 변경               |
| 보통주식                      | - 258,000 주                | 금 129,000,000 원                       | 2009.12.18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518,000 주</del>       |                                       | 2010.02.11 변경               |
| 보통주식                      | <del>- 518,000 주</del>     | <del>금 259,000,000</del> 원            | 2010.02.11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658,000 주</del>       |                                       | 2010.11.30 변경               |
| <del>보통주식</del>           | <u>658,000 주</u>           | <del>금 329,000,000</del> 원            | 2010.11.30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660,400 주</del>       |                                       | 2010.11.30 경정               |
| 보통주식                      | <del>- 660,400 주</del>     | <del>금 330,200,000</del> 원            | (신청착오)                      |
|                           |                            |                                       | 2010.12.06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680,866 주</del>       |                                       | 2010.12.14 변경               |
| 보통주식                      | <del>680,866 주</del>       | <del>금 340,433,000</del> 원            | 2010.12.15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681,796 주</del>       |                                       | 2011.03.21 변경               |
| 보통주식                      | <u> 681,796 주</u>          | <del>금 340,898,000</del> 원            | 2011.03.23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691,099 주                  | 7                                     | 2011.05.14 변경               |
| 보통주식                      | 691,099 주                  | <del>금 345,549,500 원</del>            | 2011.05.20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741,157 주</del>       |                                       | 2011.11.08 변경               |
| 보통주식                      | 691,099 주                  |                                       | 2011.11.08 등기               |
| <u> </u>                  | <u>50,058</u> 주            | 금 370,578,500 원                       | 0044 44 44 11 71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798,366 주</del>       |                                       | 2011.11.11 변경               |
| 보통주식                      | - 691,099 주                | 7 000 100 000 0                       | 2011.11.11 등기               |
| 으선구식<br>비레조사이 호스          | <u>107,267 주</u>           | <del>금 399,183,000</del> 원            | 0011 10 14 버권               |
| 발행주식의 총수                  | 872,024 주                  |                                       | 2011.12.14 변경               |
| 보통주식                      | - 693,245 주                | 7 420 010 000 0                       | 2011.12.14 등기               |
| 우선주식<br>발행주식의 총수          | - 178,779 주<br>877,758 주   | <del>금 436,012,000 원</del>            | <br>2012.03.16 변경           |
| 보통주식<br>보통주식              | <del>677,736 ↑</del>       |                                       | 2012.03.10 년경 2012.03.19 등기 |
| 우선주식                      | - 098,979 구<br>- 178,779 주 | 금 438,879,000 원                       | 2012.03.19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930,162 주                  | <u>н</u> 400,07 <del>3,000 д</del>    | <br>2013.01.12 변경           |
| - 보통주식<br>- 보통주식          | 698,979 주                  |                                       | 2013.01.15 등기               |
| 우선주식<br>                  | - 231, 183 주               | <del>금 465,081,000</del> 원            | 2010.01.10 6/1              |
| 발행주식의 총수                  | 956,364 주                  | д 100,001,000 <u>е</u>                |                             |

| 발행주식의 총<br>그 종류 및 각2                                   | , ,  | 자본금의 액                     | 변 경 연 월 일<br>등 기 연 월 일 |
|--|--|----------------------------|------------------------|
| 보통주식   | 1 <del>기                                    </del> |                            | 2013.05.03 등기          |
| 우선주식   | 257,385 주  | 금 478,182,000 원            | 2013.03.03 871         |
| 발행주식의 총수   | 980,364 주  | E 470,102,000 E            | 2013.07.10 변경          |
| 변통주식<br>- 보통주식   | 722,979 주  |                            | 2013.07.18 등기          |
| 우선주식   | 257,385 <del>7</del>                               | <del>금 490,182,000 원</del> | 2013.07.10 871         |
| 발행주식의 총수   | 1,137,227 주  | 급 450,102,000 전            | 2014.11.29 변경          |
| 보통주식   | 722,979 주  |                            | 2014.12.03 등기          |
| 우선주식   | 414,248 주  | <del>금 568,613,500 원</del> | 2014.12.00 671         |
| 발행주식의 총수   | 1,150,197 주  | D 000,010,000 &            | 2015.04.07 변경          |
| 보통주식   | 735,949 주  |                            | 2015.04.21 등기          |
| 우선주식   | 414,248 주  | 급 575,098,500 원            | 2010.04.21 0 /         |
| 발행주식의 총수   | 1,150,697 주  | ㅁ 010,000,000 년            | 2015.07.15 변경          |
| 보통주식<br>- 보통주식   | 736,449 주  |                            | 2015.07.17 등기          |
| 우선주식   | 414,248 주  | <del>급 575,348,500</del> 원 | 2010.01.11 071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741,157 주</del>                               | <u> </u>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691,099 주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50,058 주   | <del>급 370,578,500 원</del> | 2조에 따른 이기              |
|  | 00,000   | 1 0.0,0.0,000              | 2015.12.04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798,366 주</del>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691,099 주  |                            | 등기규칙 부칙 제              |
| <del>제1종우선주식                                    </del> | 107,267 주  | <del>금 399,183,000</del> 원 | 2조에 따른 이기              |
| ,, = 0 ,   |  |                            | 2015.12.04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   | 872,024 주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693,245 주  | 7 0                        | 등기규칙 부칙 제              |
| <del>제1종우선주식                                    </del> | 107,267 주  |                            | 2조에 따른 이기              |
| 제2종우선주식  | 50,058 주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u> </u>   | <del>금 436,012,0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 877,758 주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698,979 <del>주</del>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107,267 축  |                            | 2조에 따른 이기              |
| 제2종우선주식  | 50,058 주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21,454 주   | 금 438,879,000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930,162 주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698,979 주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107,267 주  |                            | 2조에 따른 이기              |
| <del>제2종우선주식                                    </del> | 50,058 주   |                            | 2015.12.04 등기          |
| <del>제3종우선주식</del>                                     |  |                            |                        |
| 제4종우선주식  | <u>52,404 주</u>                                    | 금 465,081,000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956,364 주</del>                               |                            | 2014.11.21 상업          |

| 발행주식의 총수<br>그 종류 및 각각의                                 | •                      | 자본금의 액                     | 변 경 연 월 일<br>등 기 연 월 일 |
|--|------------------------|----------------------------|------------------------|
| 보통주식   | 698,979 주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107,267 주              |                            | 2조에 따른 이기              |
| 제2종우선주식  | <del>50,058 주</del>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del>21,454 주</del>    |                            |                        |
| 제4종우선주식  | <del>52,404 주</del>    |                            |                        |
| 제5종우선주식  | 26,202 주               | <del>금 478,182,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980,364 주</del>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del>722,979 주</del>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del>- 107,267 주</del> |                            | 2조에 따른 이기              |
| <del>제2종우선주식                                    </del> | <del>50,058 주</del>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del>52,404 주</del>    |                            |                        |
| 제5종우선주식  | <u> 26,202 주</u>       | <del>금 490,182,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137,227 주</del>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del>722,979 주</del>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107,267 주              |                            | 2조에 따른 이기              |
| <del>제2종우선주식                                    </del> | <del>50,058 주</del>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del>52,404 주</del>    |                            |                        |
| 제5종우선주식  | <del>26,202 주</del>    |                            |                        |
| 제6종우선주식  | 156,863 주              | <del>금 568,613,5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1,150,197 주            |                            | 2014.11.21 상업          |
| 보통주식   | 735,949 주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107,267 주              |                            | 2조에 따른 이기              |
| <del>제2종우선주식                                    </del> | 50,058 주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52,404 주               |                            |                        |
| 제5종우선주식  | 26,202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156,863 주              | <del>금 575,098,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 1,150,697 주            |                            | 2014.11.21 상업          |
| <del>보통주식                                    </del>    | 736,449 주              |                            | 등기규칙 부칙 제              |
| 제1종우선주식  | 107,267 주              |                            | 2조에 따른 이기              |
| 제2종우선주식  | <del>50,058 주</del>    |                            | 2015.12.04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u> 52,404 주</u>       |                            |                        |
| 제5종우선주식  | <del>26,202 주</del>    |                            |                        |
| 제6종우선주식  | 156,863 주              | <del>금 575,348,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203,001 주</del> |                            | 2016.12.17 변경          |
| 보통주식   | <del>736,449 주</del>   |                            | 2016.12.21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와<br>그 조르 및 가가이 스       | 자본금의 액                     | 변 경 연 월 일<br>등 기 연 월 일 |
|---------------------------------|----------------------------|------------------------|
|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 궁기연혈일                  |
| 제1종우선주식 107,267 주               |                            |                        |
| 제2종우선주식 50,05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52,404 주                |                            |                        |
| 제5종우선주식 26,202 주                |                            |                        |
| <del>제6종우선주식 156,863 주</del>    |                            |                        |
| <del>제7종우선주식 52,304 주</del>     | <del>금 601,500,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1,229,153 주            |                            | 2016.12.21 변경          |
| 보통주식 736,449 주                  |                            | 2016.12.21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107,267 주               |                            |                        |
| 제2종우선주식 50,058 주                |                            |                        |
| <del>제3종우선주식 21,454 주</del>     |                            |                        |
| <del>제4종우선주식 52,404 주</del>     |                            |                        |
| <del>제5종우선주식 26,202 주</del>     |                            |                        |
| <del>제6종우선주식 156,863 주</del>    |                            |                        |
| <del>제7종우선주식 78,456 주</del>     | <del>금 614,576,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del>1,255,307 주</del> |                            | 2016.12.28 변경          |
| 보통주식 736,449 주                  |                            | 2016.12.2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107,267 주               |                            |                        |
| 제2종우선주식 50,05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21,454 주                | 3                          |                        |
| 제4종우선주식 52,404 주                |                            |                        |
| 제5종우선주식 26,202 주                | 7 11                       |                        |
| 제6종우선주식 156,863 주               | 7 0                        |                        |
| 제7종우선주식 104,610 주               | <del>금 627,653,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u>1,267,207 주</u>     |                            | 2017.04.18 변경          |
| 보통주식 748,349 주                  |                            | 2017.04.20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107,267 주               |                            |                        |
| 제2종우선주식 50,05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52,404 주                |                            |                        |
| 제5종우선주식 26,202 주                |                            |                        |
| 제6종우선주식 156,863 주               |                            |                        |
| 제7종우선주식 104,610 주               | <del>금 633,603,5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del>1,281,083 주</del> |                            | 2018.06.14 변경          |
| 보통주식 800,001 주                  |                            | 2018.06.1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107,267 주               |                            |                        |
| 제2종우선주식 50,05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21,454 주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br>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 자본금의 액                     | 변 경 연 월 일<br>등 기 연 월 일 |
|--|------------------------|----------------------------|------------------------|
| 제4종우선주식  | 14,628 주               |                            |                        |
| 제5종우선주식  | 26,202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156,863 추              |                            |                        |
| <del>제7종우선주식                                    </del> | - 104,610 주            | 금 640,541,500 원            |                        |
|  | 1,281,733 주            | д 010,011,000 Е            | 2018.07.13 변경          |
| 보통주식   | 800,651 주              |                            | 2018.07.20 등기          |
| 제1 <del>종</del> 우선주식                                   | 107,267 주              |                            | 2010.01.20 0 7         |
| 제2종우선주식  | 50,05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 21,454 주             |                            |                        |
| <del>제4종우선주식                                    </del> | 14,628 주               |                            |                        |
| <del>제5종우선주식                                    </del> | <u> 26,202</u>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156,863 주              |                            |                        |
| 제7종우선주식  | 100,000 구<br>104,610 주 | 금 640,866,500 원            |                        |
|  | 1,281,733 주            | <u> </u>                   | 2018.08.21 변경          |
| 보통주식   | 849,671 주              |                            | 2018.09.03 등기          |
| <del>제1종우선주식                                    </del> | 107,267 주              |                            | 2010.00.00 0 7         |
| 제2종우선주식  | 50,058 주               |                            |                        |
| <del>제3종우선주식                                    </del> | - 21,454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14,628 주               |                            |                        |
| 제5종우선주식  | <u> 26,202</u>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107,843 주              |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7              | <del>금 640,866,500</del> 원 |                        |
|  | 1,291,356 주            |                            | 2018.08.27 변경          |
| 보통주식   | 1,065,991 주            | i Ó                        | 2018.09.03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11,292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20,418 주               |                            |                        |
| 제4중우선주식  | 14,628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74,417 주               |                            |                        |
| <del>제7종우선주식                                    </del> | 104,610 주              | <del>금 645,678,000 원</del> |                        |
|  | <del>1,291,356 주</del> |                            | 2018.09.04 변경          |
| 보통주식   | 1,078,491 주            |                            | 2018.09.1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7,52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13,612 주               |                            |                        |
| <del>제4종우선주식                                    </del> | <u> 14,628 주</u>       |                            |                        |
| 제6중우선주식  | 72,487 주               |                            |                        |
| <del>제7종우선주식                                    </del> | 104,610 주              | <del>금 645,678,000</del> 원 |                        |
|  | 1,291,356 주            |                            | 2018.09.05 변경          |
| 보통주식   | 1,088,295 주            |                            | 2018.09.1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7,528 주                |                            |                        |

| 발행주식의 경  | <b></b>                | ~~~~~~~~~~~~~~~~~~~~~~~~~~~~~~~~~~~~~    | 변 경 연 월 일     |
|--|------------------------|--|---------------|
| 그 종류 및 각   | 각의 수                   | 사는 6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등 기 연 월 일     |
| 제3종우선주식  | 13,612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14,628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del>62,683 주</del>    |  |               |
| 제7종우선주식  | <del>104,610 주</del>   | <del>금 645,678,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291,356 주</del> |  | 2018.09.13 변경 |
| 보통주식   | 1,103,111 주            |  | 2018.09.1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del>7,528 주</del>     |  |               |
| 제3종우선주식  | 13,612 주               |  |               |
| 제4종우선주식  | 14,628 주               |  |               |
| <del>제6종우선주식                                    </del> | <del>47,867 주</del>    |  |               |
| 제7종우선주식  | <del>104,610 주</del>   | <del>금 645,678,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296,729 주</del> |  | 2018.09.17 변경 |
| 보통주식   | 1,167,120 주            |  | 2018.09.1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7,528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13,612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del>3,859 주</del>     |  |               |
| <del>제7종우선주식                                    </del> | <del>104,610 주</del>   | <del>금 648,364,5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1,296,729 주            |  | 2018.11.16 변경 |
| 보통주식   | 1,182,744 주            |  | 2018.11.28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2,823 주                |  |               |
| <del>제3종우선주식                                    </del> | <del>5,105 주</del>     |  |               |
| <del>제6종우선주식                                    </del> | 1,447 주                |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금 648,364,500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1,297,029 주            |  | 2019.04.08 변경 |
| 보통주식   | 1,183,044 주            |  | 2019.04.19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2,823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del>5,105 주</del>     |  |               |
| 제6종우선주식  | 1,447 주                |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del>금 648,514,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 1,297,129 주            |  | 2019.06.09 변경 |
| 보통주식   | 1,183,144 주            |  | 2019.06.24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2,823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5,105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1,447 주                | _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del>금 648,564,5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297,429 주</del> |  | 2019.06.10 변경 |
| 보통주식   | 1,183,444 주            |  | 2019.06.24 등기 |
| 제1중우선주식  | 2,823 주                |  |               |
| 제3종우선주식  | 5,105 주                |  |               |

| 발행주식의 총<br>그 종류 및 각각                              | · · ·  | 자본금의 액                     | 변 경 연 월 일<br>등 기 연 월 일         |
|---|--|----------------------------|--------------------------------|
| 제6종우선주식<br>제7종우선주식                                | 1,447 주<br>104,610 주                             | <del>금 648,714,5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 <del>1,298,729 주</del><br>1,184,744 주            |                            | 2019.06.11 변경<br>2019.06.24 등기 |
| 제1중우선주식<br>제3중우선주식                                | 2,823 주<br>                                      |                            | 2010.00.21 07                  |
| 제6종우선주식   | 1,447 주  | 7 (40 204 500 0)           |                                |
| 재7중우선주식<br>발행주식의 총수                               | 104,610 주<br>1,299,029 주                         | <del>금 649,364,500 원</del> | 2019.06.12 변경                  |
| <del>보통주식</del><br><del>제1종우선주식</del>             | 1,185,044 주<br>2,823 주                           |                            | 2019.06.24 등기                  |
| <del>제3종우선주식</del><br><del>제6종우선주식</del>          | 5,105 주<br>1,447 주                               |                            |                                |
| <del>제7종우선주식</del><br>발행주식의 총수                    | 104,610 주<br>1,299,229 주                         | <del>금 649,514,500 원</del> | 2019.06.14 변경                  |
| 보통주식<br>제1종우선주식                                   | 1,185,244 주<br>2,823 주                           |                            | 2019.06.24 등기                  |
| <del>제3종우선주식</del><br>제 <del>6종우선주식</del>         | 5,105 주<br>1,447 주                               |                            |                                |
| <del>제7종우선주식</del>                                | 104,610 주  | 금 649,614,500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br><del>보통주식</del><br><del>제1종우선주식</del> | 1,330,208 주<br>1,216,223 주<br>2,823 주            | 1 9                        | 2019.10.08 변경<br>2019.10.08 등기 |
| 제3중우선주식<br>제6중우선주식<br>제7종우선주식                     | 5,105 주<br>1,447 주                               | 7 CCF 104 000 9l           |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 104,610 주<br>1,365,208 주                         | <del>금 665,104,000 원</del> | 2019.10.12 변경<br>2019.10.24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1,216,223 주<br>2,823 주                           |                            | 2019.10.24 - 7                 |
| 제3종우선주식<br>제6종우선주식                                | 5,105 주<br>1,447 주                               |                            |                                |
| 제7 <del>종</del> 우선주식<br>제8종우선주식                   | 104,610 주<br>35,000 주                            | <del>금 682,604,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br><del>보통주식</del>                       | <del>1,377,708 주</del><br><del>1,216,223 주</del> |                            | 2019.10.19 변경<br>2019.10.24 등기 |
| <del>제1종우선주식</del><br><del>제3종우선주식</del>          | 2,823 주<br>5,105 주                               |                            |                                |
| 제 <del>6종우선주식</del><br>제 <del>7종우선주식</del>        | 1,447 주<br>104,610 주                             |                            |                                |

| 발행주식의 총수<br>그 종류 및 각각의 |                        | 자본금의 액                     | 변 경 연 월 일<br>등 기 연 월 일 |
|------------------------|------------------------|----------------------------|------------------------|
| 제8종우선주식                | 47,500 주               | <del>금 688,854,000 원</del> | 0 , 2 2 2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380,358 주</del> |                            | 2019.10.21 변경          |
| 보통주식                   | 1,218,873 주            |                            | 2019.10.31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del>2,823 주</del>     |                            |                        |
| 제3종우선주식                | <del>5,105 주</del>     |                            |                        |
| 제6종우선주식                | <del></del>            |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                        |
| <del>제8종우선주식</del>     | <del>47,500 주</del>    | <del>금 690,179,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del>1,430,358 주</del> |                            | 2020.04.10 변경          |
| 보통주식                   | <del>1,218,873 주</del> |                            | 2020.04.10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del>2,823 주</del>     |                            |                        |
| 제3종우선주식                | <del>5,105 주</del>     |                            |                        |
| 제6종우선주식                | <del></del>            |                            |                        |
| 제7종우선주식                | <del>104,610 주</del>   |                            |                        |
| 제8종우선주식                | <del>47,500 주</del>    |                            |                        |
| 제9종우선주식                | <del>50,000 주</del>    | <del>금 715,179,000</del>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 1,431,958 주            |                            | 2020.04.17 변경          |
| 보통주식                   | 1,220,473 주            |                            | 2020.04.20 등기          |
| 제1종우선주식                | 2,823 주                |                            |                        |
| 제3중우선주식                | 5,105 주                |                            |                        |
| 제6종우선주식                | 1,447 주                | 7 💍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L Q                        |                        |
| 제8중우선주식                | 47,500 주               |                            |                        |
| 제9중우선주식                | 50,000 주               | 금 715,979,000 원            | 2222 27 14 23 73       |
| 발행주식의 총수               | 1,432,208 주            |                            | 2020.07.14 변경          |
| 보통주식                   | 1,220,723 주            |                            | 2020.07.14 등기          |
| 제1중우선주식                | <u> </u>               |                            |                        |
| 제3종우선주식                | 5,105 주                |                            |                        |
| 제6종우선주식<br>제7조 0 내조시   | 1,447 주                |                            |                        |
|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                        |
| 제8중우선주식                | <del>47,500 주</del>    | 7 716 104 000 0            |                        |
| 제9종우선주식                | 50,000 주               | <del>금 716,104,000 원</del> | 2020 00 07 버겨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 1,432,608 주            |                            | 2020.09.07 변경          |
| 고 중구식<br>제1종우선주식       | 1,221,123 주<br>2,823 주 |                            | 2020.09.18 등기          |
| 제3종우선주식                | 2,823 구  <br>5,105 주   |                            |                        |
| 제3중구선구역<br>제6종우선주식     | 5,105 구  <br>1,447 주   |                            |                        |
| 제0중구선구식<br>  제7종우선주식   | 104,610 주              |                            |                        |
| 제8종우선주식                | 104,610 구<br>47,500 주  |                            |                        |
| <u>세0궁무신무역</u>         | 47,500 丁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br>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금의 액              | 변경연월일<br>등기연월일 |
|---------------------------------|---------------------|----------------|
| 제9종우선주식 50,000 주                | 금 716,304,000 원     |                |
| 목                               | 적                   |                |
| 1.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 ·<br><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소비재 수출입 유통업                  | <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부동산 <del>매매 및 임대업</del>      | <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                | <2008.04.22 삭제      | 2008.04.30 등기> |
| 1. 상품 중개업                       | <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2008.04.22 삭제      | 2008.04.30 등기> |
| <del>1. 광고대행업</del>             | <2008.04.22 추가      | 2008.04.30 등기> |
|                                 | <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2008.04.22 추가      | 2008.04.30 등기> |
|                                 | <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2008.04.22 변경      | 2008.04.30 등기> |
|                                 | <2008.09.29 삭제      | 2008.09.30 등기> |
| 1. 캐릭터 라이센싱 및 프랜차이즈업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판권 유통사업(무형재산권 역 | <del>임대) -</del>    |                |
|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판매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ار له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3 7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del>1. 출판업</del>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광고 제작 및 대행-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만화 작가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상품 중개 및 수출입-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영상, 출판물,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관리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2008.09.29 변경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1. 부동산 <del>매매 및 임대</del>       | <2008.09.29 변경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del>1. 전자상거래</del>             | <2008.09.29 추가      | 2008.09.30 등기> |
|                                 | <2009.10.30 삭제      | 2009.11.04 등기> |

| 등기번호                 | 387009  |                          |                |           |            |     |
|----------------------|---|--------------------------|----------------|-----------|------------|-----|
| <br>1. 문화사약          | _<br>넘 <del>(전시,공연,이벤트</del>                          | <br><u>기획 및 집행, 영상제작</u> | · <del>)</del> |           |            |     |
|                      |   |                          | <2008.09.29    | 추가        | 2008.09.30 | 등기> |
|                      |   |                          | <2009.10.30    | 삭제        | 2009.11.04 | 등기> |
| <del>1. 제품 디</del>   | <del>자인 -</del>                                       |                          | <2008.09.29    | 추가        | 2008.09.30 | 등기> |
|                      |   |                          | <2009.10.30    | 삭제        | 2009.11.04 | 등기> |
| <del>1. 영업마키</del>   | <del>계팅 대행</del>                                      |                          | <2008.09.29    | 추가        | 2008.09.30 | 등기> |
|                      |   |                          | <2009.10.30    | 삭제        | 2009.11.04 | 등기> |
| <del>1. 각호에</del>    | 관련된 부대사업 일  | 체-                       | <2008.09.29    | 변경        | 2008.09.30 | 등기> |
|                      |   |                          | <2009.10.30    | 삭제        | 2009.11.04 | 등기> |
| 1. 소프트워              | 웨어의 개발, 제조,   | 유통, 임대 및 유지보수역           | 엄              |           |            |     |
|                      |   |                          | <2009.10.30    | 추가        | 2009.11.04 | 등기> |
| 1. 정보화               | 실현을 위한 시스템  | 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           | .수업            |           |            |     |
|                      |   |                          | <2009.10.30    | 추가        | 2009.11.04 |     |
| ·                    | 및 데이터베이스?   | ·<br>크                   | <2009.10.30    | 추가        | 2009.11.04 | 등기> |
|                      | 제작 및 공급업  |                          | <2009.10.30    | 추가        | 2009.11.04 | 등기> |
|                      | 비스(정보처리 및 제   |                          | <2009.10.30    | 추가        |            | 등기> |
|                      | 및 정밀주변기기 제  |                          | <2009.10.30    | 추가        | 2009.11.04 | 등기> |
|                      | 비디오물(영화 , 역   |                          | <2009.10.30    | 추가        |            | 등기> |
|                      | 에 대한 전자상거래  | <del>업(통신판매업)</del>      | <2009.10.30    | 추가        | 2009.11.04 | 등기> |
| 1. 출판업               |   |                          | <2011.08.23    | 변경        | 2011.08.23 | 등기> |
|                      |   | 및 기타 사업 일체               | <2009.10.30    | 변경        | 2009.11.04 | 등기> |
| 1. 업무대형              |   | ·                        | <2012.05.22    | 변경        | 2012.05.24 | 등기> |
| · ·                  | <del>내 대한 전자상거래?</del>                                | <del>법(통신판매업)</del>      | <2011.08.23    | 추가        | 2011.08.23 | 등기> |
| 1. 문서스킨              |   |                          | <2012.05.22    | 변경        | 2012.05.24 | 등기> |
|                      | 에 대한 서비스업   | UI CH                    | <2012.05.22    | 추가        | 2012.05.24 | 등기> |
| 1. 장비임디              |   |                          | <2012.09.04    | 변경        | 2012.09.05 | 등기> |
|                      | 에 대한 전자상거래  | 업(통신판매업)                 | <2012.05.22    | 추가        | 2012.05.24 | 등기> |
| <del>1. 위 각호</del>   | 에 대한 서비스업   |                          | <2012.09.04    | 변경        | 2012.09.05 | 등기> |
|                      |   | -1 1 1 1 1 1 1 1         | <2014.01.16    | 삭제        | 2014.01.17 | 등기> |
|                      |   | 및 기타 사업 일체               | <2012.05.22    | 추가        | 2012.05.24 | 등기> |
| <del>1. 위 각호</del>   | 에 대한 전자상거래  | 업(통신판매업)                 | <2012.09.04    | 변경        | 2012.09.05 | 등기> |
|                      | N H N - N - D - N - L - N - L - L - L - L - L - L - L |                          | <2014.01.16    | <u>삭제</u> | 2014.01.17 | 등기> |
| 1. 위 각호              | 에 무대되는 무역업  | 및 기타 사업 일체               | <2012.09.04    | 추가        | 2012.09.05 | 등기> |
| 1 7 7 7              |   |                          | <2014.01.16    | 삭제        | 2014.01.17 | 등기> |
| 1. 광고업               | ો જીઓો તો   |                          | <2014.01.16    | 추가        | 2014.01.17 | 등기> |
| 1. 이동통선              |   |                          | <2014.01.16    | 추가        | 2014.01.17 | 등기> |
| 1. 위 약호              | 에 대한 서비스업   |                          | <2014.01.16    | 변경        | 2014.01.17 | 등기> |
| 1 () =) <del>-</del> | 세 미국 카카카카   | 시(토기회레시)                 | <2019.03.29    | 삭제        | 2019.05.08 | 등기> |
| 1. 커 4호              | 에 대한 전자상거래  | 법(중신판매법)                 | <2014.01.16    | 변경        | 2014.01.17 | 등기> |
| 1 (1) 7)             | 제 브레리노 ㅁ셔지  | 피 키리 기신 시크               | <2019.03.29    | 삭제        | 2019.05.08 | 등기> |
| 1. 커 4호              | 에 무내되는 무역업  | <del>및 기타 사업 일체</del>    | <2014.01.16    | 변경        | 2014.01.17 | 등기> |
|                      |   |                          | <2019.03.29    | 삭제        | 2019.05.08 | 등기> |

| 등기번호               | 387009     |                       |             |    |            |     |
|--------------------|------------|-----------------------|-------------|----|------------|-----|
| 1. 부동산             | 임대업 및 전대업  |                       | <2019.03.29 | 추가 | 2019.05.08 | 등기> |
| <del>1. 위 각호</del> | 에 대한 서비스업  |                       | <2019.03.29 | 추가 | 2019.05.08 | 등기> |
|                    |            |                       | <2020.03.26 | 삭제 | 2020.04.06 | 등기> |
| <del>1. 위 각호</del> | 에 대한 전자상거래 | <del>(통신판매업)</del>    | <2019.03.29 | 추가 | 2019.05.08 | 등기> |
|                    |            |                       | <2020.03.26 | 삭제 | 2020.04.06 | 등기> |
| <del>1. 위 각호</del> | 에 부대되는 무역업 | <del>및 기타 사업 일체</del> | <2019.03.29 | 추가 | 2019.05.08 | 등기> |
|                    |            |                       | <2020.03.26 | 삭제 | 2020.04.06 | 등기> |
| 1. 영화 및            | 비디오 배급업    |                       | <2020.03.26 | 추가 | 2020.04.06 | 등기> |
| 1. 위 각호            | 에 대한 서비스업  |                       | <2020.03.26 | 추가 | 2020.04.06 | 등기> |
| 1. 위 각호            | 에 대한 전자상거래 | 넙(통신판매업)              | <2020.03.26 | 추가 | 2020.04.06 | 등기> |
| 1. 위 각호            | 에 부대되는 무역업 | 및 기타 사업 일체            | <2020.03.26 | 추가 | 2020.04.06 | 등기>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배기의 790719-*****
사내이사 배기식 790719-*****
   2011 년 03 월
              31 일
                   중임
                          2011 년
                                04 월
                                     07 일
                                          등기
                   중임
   2014 년 03 월
              31 일
                          2014 년
                                04 월
                                     07 일
                                           등기
  2017 년 03 월
              31 일
                   중임
                          2017 년
                                04 월
                                     07 일
                                           등기
  2020 년 03 월
             31 일 중임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이사 현정환 800731-*****
                          2009 년 11 월 04 일 등기
   2009 년 10 월 30 일 사임
이사 권민석 810925-*****
사내이사 권민석 810925-*****
   2011 년 03 월 31 일
                          2011 년
                                04 월 07 일
  2014 년 03 월
              31 일
                   중임
                                04 월 07 일 등기
                          2014 년
  2015 년 03 월 24 일
                   사임
                          2015 년
                                04 월
                                     21 일
                                          등기
감사 심민규 830128-*****
                                           등기
             31 일 중임
  2011 년 03 월
                          2011 년
                                04 월 07 일
   2011 년 12 월 13 일 사임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1-204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7-206
   2008 년 08 월 04 일 주소변경
                          2009 년 11 월 04 일 등기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 168~402
   2008 년 11 월 10 일 주소변경
                             2009 년 11 월 04 일 등기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20-1702
                             2009 년 12 월 17 일 등기
   2009 년 12 월 07 일 주소변경
  2011 년 03 월 31 일 중임
                          2011 년 04 월 07 일 등기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20동 1702호(잠실동, 트리지움)
   2014 년 03 월 31 일 중임 2014 년 04 월 07 일 등기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01동 601호(잠실동, 잠실엘스)
  2015 년 03 월 23 일 주소변경
                          2016 년 05 월 11 일 등기
대표이사 배기식 790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42동 2701호(잠실동, 잠실엘스
```

| 등기번호   | 38            | 7009     |             |   |       |            |             |             |
|--|---------------|----------|-------------|---|-------|------------|-------------|-------------|
| 2016 \   | <u>- 11</u> 월 | 29 일     | <br>주소변경    | 2016                                    | 5 년 1 | <u>2</u> 월 | 08          | 일 등기        |
| 2017 \   | 년 03 월        | 31 일     | 중임          | 2017 년                                  | 04 월  | 07         | 일           | 등기          |
| 대표이사 ㅂ   | 배기식 79        | 0719-*** | **** 경기     | 도 성남시                                   | ] 분당  | 구 산        | 운로.         | 48번길 3(운중동) |
| 2018 님   |               | _        | 주소변경        | 2018                                    | 3 년 ] | 2 월        | 10          | 일 등기        |
| 2020 남   | <u>년</u> 03 월 | 31 일     | 중임          | 2020 년                                  | 04 월  | . 06       | 일           | 등기          |
| 사내이사 최   |               |          |             |   |       |            |             |             |
| 2009 남   |               |          | . –         | 2009 년                                  |       |            |             | 등기          |
| 2010 \   |               | 17 일     |             | 2010 년                                  | 08 월  | . 19       | 일           | 등기          |
| 사외이사 경   | 0 0           |          |             |   |       |            |             |             |
| 2011 \   |               |          | 취임          | 2011 년                                  |       |            | 일           |             |
| 2014 \   |               |          |             | 2014 년                                  |       |            |             | 등기          |
| 2015 년   |               | 24 일     |             | 2015 년                                  | 04 월  | . 21       | 일           | 등기          |
| 감사 김제의   | •             |          |             | 0011 1                                  | 10 0  | 4.4        | ۵ì          | 드리          |
| 2011 \   |               |          | 취임          | 2011 년                                  |       |            | 일           |             |
| 2014 \   |               |          | 중임          | 2014 년                                  |       |            | 일           | 등기          |
| 2015 년   | <del></del>   |          | 사임          | 2015 년                                  | 04 월  | 21         | 일           | 등기          |
| 2015 남   |               |          |             | 901E 13                                 | 04 월  | 01         | റി          | 등기          |
| 2015 t   |               |          | 취임          | 2015 년<br>2018 년                        |       |            |             | 등기<br>등기    |
| ,  |               | _        |             |   |       |            |             |             |
| 2020 년 03 월 26 일 사임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br><del>기타비상무이사 김재우 760811-***</del> |               |          |             |   |       |            |             |             |
| 2015 \   |               |          | 11 취임<br>취임 | ·<br>2015 년                             | 04 월  | 21         | <u>o]</u>   | 등기          |
| 2017 t   |               |          |             | 2017 년                                  |       |            |             | 등기          |
| 2017 년 03 월 30 일 사임 2017 년 04 월 07 일 등기<br><del>감사 정성은 770418 ******</del>   |               |          |             |   |       |            |             |             |
| 2015 \   |               |          | 취임          | 2015 년                                  | 04 월  | 21         | 일           | 등기          |
| 2018 \   |               |          |             | 2018 년                                  |       |            |             | 등기          |
| 2020 \   |               | _        | 사임          | - 2020 년                                |       |            |             | 등기          |
| 사내이사 신은선 840317-*****  |               |          |             |   |       |            |             |             |
| 2017 \   | - O3 월        | 31 일     | 취임          | 2017 년                                  | 04 월  | 07         | 일           | 등기          |
| 2020 닉   | 년 03 월        | 31 일     | 중임          | 2020 년                                  | 04 월  | . 06       | 일           | 등기          |
| 사외이사 이관훈 731205-******   |               |          |             |   |       |            |             |             |
|  |               | 30 일     |             | 2017 년                                  | 04 월  | 07         | 일           | 등기          |
|  |               | 26 일     |             | 2020 년                                  | 04 월  | 06         | 일           | 등기          |
| 사외이사 년   | _             |          | ****        | *************************************** |       |            |             |             |
| 2017 닉   |               | _        |             | 2017 년                                  |       |            | 일           | 등기          |
|  |               | 26 일     |             | 2020 년                                  | 04 월  | . 06       | 일           | 등기          |
| 사외이사 이   | -             |          |             |   |       |            |             |             |
|  |               | 26 일     |             | 2020 년                                  | 04 월  | . 06       | 일           | 등기          |
| 기타비상무이사 이관훈 731205-*****   |               |          |             |   |       |            |             |             |
|  | 1 00 01       | വര കി    | 치이          | 2020 년                                  | 04 원  | 06         | 일           | 등기          |
| 2020 સ   |               |          |             |   | 01 5  |            | <del></del> | 0 1         |
| 기타비상무  | 이사 변천         |          | 30-****     |   |       |            |             |             |

387009

감사 김용선 801026-\*\*\*\*

2020 년 03 월 26 일 취임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우선주식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 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 (잔여재산분배)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 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 (일반상화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 다.

387009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화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아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가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화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del>(금지행위)</del>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 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 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57.209주, 조정전 전환비율 1.000
- <del>-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71,511주, 조</del> 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화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95.348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 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화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387009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매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자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매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년 11월 8일 설정 2011년 11월 8일 등가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 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받는다.

# (잔여재산분배)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 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 (일반상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

387009

다.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향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향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가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시체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체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50,058주, 조정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62,574주, 조 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83,434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387009

## 조정된다.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메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메각하는 경우 1주당 메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격이 1주당 메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년 11월 8일 설정 2011년 11월 8일 등가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9 년 01 월 10 일 등기

2018 년 11 월 28 일 경정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받는다.

# (잔여재산분배)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 (일반상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열람일시 : 2021년02월01일 10시59분23초

387009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107,267주, 조정 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134,085주, 조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178,782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

387009

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매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매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년 11월 8일 설정 2011년 11월 8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9 년 01 월 10 일 등기

2019 년 01 월 10 일 신청착오 경정

# 제2종우선주식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 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발는다.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에 관한 시항)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 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 (일반상화권)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387009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del>(전환권)</del>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50,058주, 조정 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62,574주, 조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83,434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387009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메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메각하는 경우 1주당 메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메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년 12월 14일 설정 2011년 12월 14일 등가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2018 년 08 월 27 일 말소 2018 년 09 월 03 일 등기

제3종우선주식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배당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받는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일반상환권)

387009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21,454주, 조정 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26,818주, 조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35,759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387009

- 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매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매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 2011년 12월 14일 설정 2011년 12월 14일 등기
-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제4종우선주식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잔여재산분배)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387009

대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의결권)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상환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⑦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87009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 <del>혀진 경우</del>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2014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다음 조정표의 2014년 매출액의 경우, 회사의 전자책 관련 매출(1. 일반적인 전자책 콘텐츠 및 출판, 교육, 엔터테인먼트, 각종 상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2. 회사의 자산, 인력 등을 활용한 각종 솔루션 판매 및 서비스, 3. 소프트웨어, 4. 하드웨어, 5. 디자털광고, 6. 기타 서비스 및 용역 등)로 한정하도록 한다.
-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240억원 이상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없음(전환가 38,165원)]
-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200억원 이상~240억원 미만 / 조정후 전환가격 : 33,039원]
-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1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조정후 전환가격 : 27,912원]
-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160억원 미만 / 조정후 저화가격 : 22.785원]
- 3.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 수

387009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이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6. 회사가 타시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9.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50%가 38,165원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가의 50%로 조정하도록 한다.

2013년 01월 12일 설정 2013년 01월 15일 등가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2018 년 09 월 17 일 말소 2018 년 09 월 18 일 등기

## 제5종우선주식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387009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잔여재산분배)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

387009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2014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다음 조정표의 2014년 매출액의 경우, 회사의 전자책 관련 매출(1. 일반적인 전자책 콘텐츠 및 출판, 교육, 엔터테인먼트, 각종 상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2. 회사의자산, 인력 등을 활용한 각종 솔루션 판매 및 서비스, 3. 소프트웨어, 4. 하드웨어, 5. 디자털광고, 6. 기타 서비스 및 용역 등)로 한정하도록 한다.
-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240억원 이상 /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없음(전환가38,165원)]
-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200억원 이상~240억원 미만 / 조정 후 전환가격: 33,039원)]
-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1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조정 후 전환가격: 27,912원)]
-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160억위 미만 / 조정 후 전화가격: 22,785위)]
- 3.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

 $Ni = Bi \times \{(Ae/Be)-1\}$ 

387009

-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 한다.
-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 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
-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9.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50%가 38,165원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 가의 50%로 조정하도록 한다.

2013년 04월 27일 설정 2013년 05월 03일 등가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2018 년 08 월 27 일 말소 2018 년 09 월 03 일 등기

#### 제6종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

387009

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 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387009

-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
- 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8.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
- 각가격의 70%가 전환가격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가의 70%로 조정하도록 하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87009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⑦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4년 11월 29일 설정 2014년 12월 03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제7종우선주식

#### (의결권)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만기 상환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잔여재산분배)

대상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에 대하여 상환가액(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 포함)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는 참가적으로 한다.

387009

## (상환기간)

우선주 주주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는 위 상환기간의 개시 이전에도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회사가 우선주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주주간계약") 제3조, 제4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대상회사의 보통주식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상장 기한")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회사가 우선주 주주와 체결한 우선주인수계약("우선주인수계약")상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대상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상 확약사항 기타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상환가액)

우선주 1주당 상환가액은 우선주 발행가격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 의 비율로 산정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되, 우선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위 "주당 발행가격"의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우선주발행가격의 조정이 있었을 때에는 동일한 조정을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배당금과 이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 의 비율로 산정된 이자의 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단,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상환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주 1주당 상환가액은 우선주 발행가격과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19% 의 비율로 산정된 이자의 합계액과 상환일 기준 우선주의 공정가치(국내 4대 회계법인 중 우선주 주주가 선정한 1개 회계법인이 산정)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대상회사가 주주간계약 제3조, 제4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대상회사의 보통주식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됨에도 불구하고, 상장 기한 내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주인수계약상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대상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상 확약사항 기타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상환절차)

우선주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가액의 지급일("상환일")의 2주 전에 대상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상환일에 대상회사에 우선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회사는 우선주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우선주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환되지 못한 주식에 대한 상환기일은 그 상환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자동연기된다.

대상회사가 상환에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상환일에 우선주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상회사는 상환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가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20%의 비율로 산정된 이자를 상환가액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대상회사에 상환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대상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포함)를 취하여야 한다.

(전환기간)

387009

발행일 이후 만기상환일 이전 상시

(전환조건)

우선주의 주주는 전환기간 중 언제라도 자신이 보유한 우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 전환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위와 동일한 전환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조건에 따라 우선주의 상환이 청구되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전환시 발행주식)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 금 오백(500)원)

(전환계산방법)

우선주 1주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우선주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숫자로 하며, 우선주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은 우선주 발행가격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재된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전환비율의 조정을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전 전환가격×{A + (B × C/D)}

조정후 전환가격 = ------

A + B

-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격
- D: 조정전 전환가격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대상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상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 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대상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 체결 이전에 부여했거나 우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에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전환가격 조정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

대상회사의 인적분할, 대상회사가 소멸하는 합병 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는 분할합병: 그 사유 발생 직전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의결권부 상환전환우 선주식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주식 분할 또는 병합: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됨.

대상회사가 대상회사의 발행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주당공모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위 주당공모가액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대상회사가 국내외 기업과의 피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M&A" 시의 매각단가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은 M&A시의 1주당 매각단가로 조정됨.

387009

단주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전환절차)

우선주 주주는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대상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환청구서가 대상회사에 제출된 이후에는 전환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주식의 전환은 대상회사가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날("전환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일이 속하는 연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대상회사는 전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식 주권을 교부하고,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주로 명의개서한다.

대상회사는 전환기간의 종료시까지 수권주식총수에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해 두어야 한다. 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대상회사가 부담한다.

# (신주인수권)

대상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16 년 12 월 17 일 변경 2016 년 12 월 21 일 등기

제8종우선주식

# (의결권)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익배당)

보통주와 동일하다.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 (잔여재산분배)

대상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4%]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는 참가적으로 한다.

(전환기간)

발행 이후 존속기간 이전 상시

#### (전환조건)

우선주의 주주는 전환기간 중 언제라도 자신이 보유한 우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 전환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위와 동일한 전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시 발행주식)

대상회사의 보통주식 (액면가 금 오백(500)원)

열람일시 : 2021년02월01일 10시59분23초

36/55

387009

### (전환계산방법)

우선주1주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우선주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숫자로 하며, 우선주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은 우선주 발행가격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재된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전환비율의 조정을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 A+ (B x C/D) / A + B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전 전화가격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대상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상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 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대상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 체결 이전에 부여했거나 우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에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전환가격 조정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

대상회사의 인적분할, 대상회사가 소멸하는 합병 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는 분할합병 : 그 사유 발생 직전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주식 분할 또는 병합 :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됨.

대상회사가 대상회사의 발행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주당공모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위 주당공모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대상회사가 국내외 기업과의 피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 "M&A"시의 매각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은 M&A시의 1주당 매각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단주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환절차)

우선주 주주는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대상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하는 우선주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환청구서가 대상회사에 제출된 이후에는 전환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주식의 전환은 대상회사가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날 ("전환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일이 속하는 연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대상회사는 전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식 주권을 교부하고,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주로 명

열람일시 : 2021년02월01일 10시59분23초

387009

의개서한다.

대상회사는 전환기간의 종료시까지 수권주식총수에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해 두어야 한다. 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대상회사가 부담한다.

(신주인수권)

대상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19 년 10 월 12 일 설정 2019 년 10 월 24 일 등기

제9종우선주식

(의결권)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익배당)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우선배당률은 발행가액의 1 %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 대상회사의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잔여재산분배)

대상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4%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는 참가적으로 한다.

(전환기간)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이전 상시 (전환조건)

우선주의 주주는 전환기간 중 언제라도 자신이 보유한 우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 전환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위와 동일한 전환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시 발행주식)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 금 오백(500)원)

(전환계산방법)

우선주 1주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우선주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숫자로 하며, 우선주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은 우선주 발행가격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재된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전환비율의 조정을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화가격 = 조정전 전화가격 x {A + (B x 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0원으로 함)

387009

### D: 조정전 전환가격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대상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상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 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대상회사가 우선주인수계약 체결 이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전환가격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회사의 인적분할, 대상회사가 소멸하는 합병 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는 분할합병: 그 사유 발생 직전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의결권부 전환우선주 식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주식 분할 또는 병합: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됨.

대상회사가 대상회사의 발행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주당공모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위 주당공모가액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대상회사가 국내외 기업과의 피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 "M&A" 시의 매각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은 M&A시의 1주당 매각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됨.

단주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전환절차)

우선주 주주는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대상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환청구서가 대상회사에 제출된 이후에는 전환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주식의 전환은 대상회사가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날("전환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대상회사는 전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식 주권을 교부하고,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주로 명의개서한다.

대상회사는 전환기간의 종료시까지 수권주식총수에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해 두어야 한다. 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대상회사가 부담한다.

### (신주인수권)

대상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0 년 04 월 10 일 설정 2020 년 04 월 10 일 등기

# 기 타 사 항

### 1. 발행주식의 내용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 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 (잔여재산분배)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 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 2011 년 11 월 08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상환주식

### (일반상화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

387009

다.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가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년 11 월 08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전환주식

(전화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체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체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57,209주, 조정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71,511주, 조 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95,348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387009

#### 수를 말한다.

-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매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매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 년 11 월 08 일 등기

####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57,209주, 조정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71,511주, 조 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95,348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당시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매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387009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매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년 월 일 경정 2011 년 11 월 11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받는다.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 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상환주식

### (일반상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387009

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가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전환주식

### <del>(전환권)</del>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체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체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 (전화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50,058주, 조정 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62,574주, 조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83,434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387009

는 본계약 당시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매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 격이 1주당 매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 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③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 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우선주가 본건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의 보통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종류주주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435조 내지 제436조를 준용한다

387009

-

###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상환주식

# (일반상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4년 11월 3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del>(상환의무)</del>

- ①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가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전환주식

###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화할 수 있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전환권은 기업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점의 익일에 소멸한다.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387009

# (전환조건의 조정)

- ① 투자기업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중 본질적인 영업활동인 전자책 관련사업을통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조건 및 우선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준 매출액이 60억원이상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13,984원, 조정주식수 21,454주, 조정 전 전환비율 1.00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이상 60억원미만] : 조정전환가격 11,187원, 조정주식수 26,818주, 조정전전환비율 1,250
- [기준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일 경우] : 조정전환가격 8,390원, 조정주식수 35,759주, 조정전 전환비율 1.667
- 단, 본 계약과 같은 투자조건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이 25억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계약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기준 매출액을 수정하도록 한다.
- ② 투자기업이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결정된 최종 전환가격을 하회하는가 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③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④ 투자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경영권 메각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메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66.7%가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환가격이 1주당 메각단가의 66.7%로 조정된다.

2011 년 12 월 14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387009

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분배)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의결권)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화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2013 년 01 월 15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상환주식

### (상환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387009

- ①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⑦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013 년 01 월 15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전환주식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화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387009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2014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다음 조정표의 2014년 매출액의 경우, 회사의 전자책 관련 매출(1. 일반적인 전자책 콘텐츠 및 출판, 교육, 엔터테인먼트, 각종 상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2. 회사의자산, 인력 등을 활용한 각종 솔루션 판매 및 서비스, 3. 소프트웨어, 4. 하드웨어, 5. 디자털광고, 6. 기타 서비스 및 용역 등)로 한정하도록 한다.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240억원 이상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없음(전환가 38,165원)]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200억원 이상~240억원 미만 / 조정후 전환가격 : 33,039원]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1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조정후 전환가격 : 27,912원]

[회계연도: 2014 / 매출액 : 160억원 미만 / 조정후 전환가격 : 22,785원]

3.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e/Be)-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6. 회사가 타시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 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
-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9.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50%가 38,165원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 가의 50%로 조정하도록 한다.

387009

2013 년 01 월 15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화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잔여재산분배)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의결권)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013 년 05 월 03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1. 상환주식

387009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013 년 05 월 03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 1. 저화주식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

387009

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②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2014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다음 조정표의 2014년 매출액의 경우, 회사의 전자책 관련 매출(1. 일반적인 전자책 콘텐츠 및 출판, 교육, 엔터테인먼트, 각종 상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2. 회사의 자산, 인력 등을 활용한 각종 솔루션 판매 및 서비스, 3. 소프트웨어, 4. 하드웨어, 5. 디자털광고, 6. 기타 서비스 및 용역 등)로 한정하도록 한다.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240억원 이상 /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없음(전환가38,165원)]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200억원 이상~240억원 미만 / 조정 후 전환가격: 33,039원)]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1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조정 후 전환가격: 27,912원)]

[회계년도: 2014 / 매출액: 160억원 미만 / 조정 후 전환가격: 22,785원)]

3.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이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 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 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9.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50%가 38,165원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 가의 50%로 조정하도록 한다.

2013 년 05 월 03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12 월 04 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10층 11층(역삼동) 주식회사 만두엔터테인먼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10층(역삼동, 어반벤처빌딩) 주식회사 디노먼트를 합병

2019 년 05 월 08 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딜라이트스퀘어1차) 주식회사 라프텔을 합병 2019 년 10 월 08 일 등기

###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26, 서울빌딩 지하1층(대치동)

2012 년 05 월 22 일 설치 2012 년 05 월 24 일 등기 2012 년 09 월 04 일 폐지 2012 년 09 월 05 일 등기

# 주 식 매 수 선 택 권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1)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1) 회사의 임직원
  - 2) 회사 외부인 중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기관)
  - 4) 대학

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우

387009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u>2011 년 03 월 18 일</u> 설정 <u>2011 년 03 월 23 일 등</u>기

회사성립연월일

2008 년 03 월 31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8 년 03 월 31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1년02월01일 10시59분23초

55/55